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비발전지구 및 상생협력지구 신설》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47호)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17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제220004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정비발전지구 제도 신설(안 제2조제6호 신설)	3
나.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제(안 제20조의2 신설 등)	6
다. 정비발전지구의 규제 특례(안 제20조의4 신설)	15
라.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20조의5 신설)	19
II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제2200217호)	21
1. 제안경위	21
2. 제안이유	21
3. 주요내용	22
4. 검토의견	24
가. 상생협력지구 제도 신설(안 제2조제6호 신설)	24
나.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및 해제(안 제20조의2 신설 등)	27

다. 상생협력지구의 규제 특례 및 행위 제한	
(안 제20조의5 및 제20조의7 신설)	37
라.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및 사용(안 제20조의6 신설)	41

I.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제220004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나.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 다.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 현행법에 따른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 라.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4. 검토의견

가. 정비발전지구 제도 신설(안 제2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정비발전지구”란 <u>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¹⁾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확일성을 보완하고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의 권역²⁾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

1) 정부는 2005.6. 발표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서 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하고 규제의 확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2007.1. 의안번호 제195975호)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나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정비발전지구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현행법의 취지, 지방소멸 우려 등을 들어 비수도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는 특정 지구를 지정하기보다는 개별법상 지원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

-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구체적인 정책효과의 분석과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개정안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한 개별법상 지원

대상지역	개별법에 따른 지원	
	근거법령	내용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의 하수 배출 건축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배제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부, 기재부)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성장촉진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포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항목 중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 사항으로 성장촉진지역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포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도시재생법 (국토부)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추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토부)	○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체계 마련 ○ 사업구역에 대한 용적률 등 도시계획 특례 및 자금 지원 규정, 이주기업에 대한 시설 제공 및 부담금 감면 근거 등 마련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부)	○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매입대금 지원 규정 등 종전부동산 매입 지원 * 총 7.4km² 중 7.3km² 매각(114개 부동산) 완료('21.7)

※자료: 국토교통부

나.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제(안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정비발전지구</u>에 관한 사항 9. -----제8호----- -----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u>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u>

현행	개정안
	<u>수립·시행하는 지역</u>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u>성장촉진지역</u>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u>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u>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인접지역</u> ② 시·도지사는 <u>정비발전지구의 지정</u>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u>의견서</u>, <u>정비발전계획안</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정비발전지구</u>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u>정비발전지구</u>

현행	개정안
<신 설>	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도사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정된 정비발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이하 “정비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2.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현행	개정안
<신설>	는 사항 ②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발전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승인받은 정비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발전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

현행	개정안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략) <신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할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비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20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과 지정해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에 관한 사항</u>
8. (생략)		9. 정비발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8호와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른 법률의 개정 : 「토지이용규제법」 [별표]에 연번 139의2 신설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139의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의2	정비발전지구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①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②성장촉진지역, ③공업지역 중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④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안 제20조의2 등).

관할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기간, 위치 및 면적, 재원조달과 토지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함(안 제20조의3).

정비발전지구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거나 정비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일정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됨(안 제20조의6).

개정안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약 4,048km²로, 현 수도권 면적 1만 1,872km²의 약 34.1%에 상당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 지역

(2021. 8. 기준)

대상지역	세부지역	총면적(km ²)	중복지역 제외면적(km ²)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지역	(전체)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일부)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3,830	3,830
성장촉진지역	행안부고시 2019-73호로 수도권 지자체는 해당 없음	—	—
기존 공업지역	수도권 내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 전체 기준	215.7	210.7 (자연보전권역 제외)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총 120개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7.4	7.4
총 계		4,053.1	4,048.1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성장촉진지역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서⁴⁾ 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성장촉진지역을 지정 대상 지역으로 규정한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인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공장의 신설·증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군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8)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9)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합계	70개 시·군

설 등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⁵⁾

셋째,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절차와 정비발전계획 수립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위치·면적,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등을 포함하여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뒤에서 살펴볼 송석준의원안⁶⁾에서와 같이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면” 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제269회 국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19면(「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 참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제20조의3(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생협력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정비발전지구의 규제 특례(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규제 특례 등) ①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권역별 행위 제한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8.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⁷⁾ ② 수도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⁸⁾ ③ 과밀부담금⁹⁾의 부과·징수, ④ 총량규제,¹⁰⁾ ⑤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¹¹⁾ ⑥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¹²⁾ ⑦ 공장의 신·증설, 이전, 업종 변경의 제한¹³⁾, ⑧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 제한¹⁴⁾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에 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면 수도권 권역 규제의 경직성·획일성을 보완하고 수도권 내의 낙후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 수도권 면적의 약 34.1%에 상당하는 정비발전지구 내에서 수도권 내의 권역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현행법의 목적¹⁵⁾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관련 규제 완화 시 수질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대구광역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반면, 경기도는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은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의 중첩 등 여러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중복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찬성의견을 제출함.

따라서, 정비발전지구의 규제 특례 범위에 대해서는 동 지구의 지정 목적,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라.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2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발전지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2.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3.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②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①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②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③ 해당 정비발전지구 내의 임대주택 건설·공급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정비발전지구의 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에 재투자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Ⅱ.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제220021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7.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과밀개발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 나.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생협력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다.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위치, 개발사업기간,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 라.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이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및 운영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 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된 곳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산학협력시설을 포함. 단, 대학의

설치는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 과밀부담,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규제, 과역기발설치비용 부담,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의 적용 예외로 함(안 제20조의5 신설).

바. 상생협력지구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 및 국가의 출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사. 상생협력지구 지정 후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 및 건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상생협력지구지정 해제를 신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상생협력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7 및 제20조의8 신설).

4. 검토의견

가. 상생협력지구 제도 신설(안 제2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상생협력지구”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등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등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획일성을 보완하고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의 권역¹⁶⁾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상생협력지구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현행법의 취지, 지방소멸 우려 등을 들어 비수도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를 배제할 수 있는 특정 지구를 지정하기보다는 개별법상 지원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구체적인 정책효과의 분석과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개정안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한 개별법상 지원

대상지역	개별법에 따른 지원	
	근거법령	내용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하수 배출건축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 적용 배제 ○오염총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개발대상 섬 지역	섬 발전 촉진법(행안부)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세제 및 사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행안부)	○반환공역구역 관련 종합계획 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 등 각종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 가능 ○해당 구역으로의 대학 이전·증설, 및 외국대학 신설 허용, 공장 산·증설 허용, 공장총량 별도 배정,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면제 등 수도권정비법상 특례 부여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상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지원 ○사회기반시설 설치·보수 우선 지원, 사회복지·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지방하천 정비 비용 등 지원 ○지역 내 농림·해양수산업 관련 기금 지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국토부)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체계 마련 ○사업구역에 대한 용적률 등 도시계획 특례 및 자금 지원 규정, 이주기업에 대한 시설 제공 및 부담금 감면 근거 등 마련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토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매입대금 지원 규정 등 종전부동산 매입 지원 * 총 7.4km ² 중 7.3km ² 매각(114개 부동산) 완료('21.7)

※자료: 국토교통부

나.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및 해제(안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1. ~ 7. (생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② ~ ④ (생략) <신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상생협력지구</u>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u>상생협력지구</u>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대상 <u>상생협력지구</u>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현행	개정안
	<u>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u>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인접지역 ②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상생협력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현행	개정안
<신 설>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상생협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개정안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생협력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1.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과 상생협력방향</u> <u>2. 상생협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u> <u>3.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사업기간</u> <u>4.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정자 및 시행방법</u> <u>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u> <u>6.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u>7.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u> <u>8.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상생협력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u> <u>③ 시·도지사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상생협력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상생협력지구 및 상생협력계획에 대한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운영방향·위치·면적 및 개발사업기간의 적정성 2.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현행	개정안
<u><신설></u>	<u>효과</u> 3. <u>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 등의 의견</u> 4. <u>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정성</u> 5. <u>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상생협력계획의 적정성</u> 6. <u>그 밖에 상생협력지구 지정 및 상생협력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제20조의8(상생협력지구의 지정 해제)</u>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상생협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1. <u>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u> 2. <u>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u> 3. <u>상생협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거나 상생협력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u> 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이</u>

현행	개정안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수도권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신설>	<u>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u> 9. <u>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10. 그 밖에 수도권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른 법률의 개정 : 「토지이용규제법」 [별표]에 연번 249 신설		
24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지구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①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②특수 상황지역¹⁷⁾, ③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④접경지역, ⑤

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⑥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안 제20조의2 등).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위치 및 면적, 개발사업기간, 재원조달과 토지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함(안 제20조의3).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또는 상생협력계획의 승인을 위한 심의 시에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운영방향,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관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 등의 의견, 규제 특례의 적정성, 상생협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20조의4).

상생협력지구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생협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력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상생협력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일정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20조의8).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약 9,042.9km²로, 현 수도권 면적 1만 1,872km²의 약 76.2%에 상당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상생협력지구 지정 대상 지역

(2021. 8. 기준)

대상지역		세부지역	총면적(km ²)	중복지역 제외면적(km ²)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지역(제1호)		(전체)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일부)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3,830	3,830
특수상황 지역 (제2호)	접경지역 (제4호)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3,712	3,712
	개발대상섬	인천 중구(2), 서구(1), 강화(8), 옹진(21), 경기 안산(2), 화성(2) 등 36개 도서	266	14 (접경지역 제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제3호)		인천 부평구 일부, 경기 성남, 고양시, 의정부시 등 14개 시·군 일부	3,501	1,268 (특수상황지역 제외)
기존 공업지역(제5호)		수도권 내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 전체	221.5	211.5 (오염총량제 지역 제외)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총 120개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7.4	7.4
총 계			11,537.8	9,042.9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인바,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되어 공장의 신설·증설 등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⁸⁾

18) 제269회 국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 19면(「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 참조.

다. 상생협력지구의 규제 특례 및 행위 제한(안 제20조의5 및 제2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5(상생협력지구 지정으로 인한 법 적용 특례) ① 상생협력지구에서는 상생협력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시설이 설치제한. 다만, 대학의 설치는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된다.</u> <u>2. 제11조에 따른 종전 대치에 관한 조치</u> <u>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u> <u>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u> <u>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u> <u>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u> <u>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u> <u>8.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제한</u> <u>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u>

현행	개정안
<신설>	본다. 제20조의7(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상생협력지구에서는 상생협력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¹⁹⁾ 및 산학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협력시설의 설치 제한,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²⁰⁾ ③ 과밀부담금²¹⁾의 부과·징수, ④ 총량규제,²²⁾ ⑤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²³⁾ ⑥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²⁴⁾ ⑦ 공장의 신·증설, 이전, 업종 변경의 제한²⁵⁾, ⑧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 제한²⁶⁾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2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 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지구에 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면 수도권 권역 규제의 경직성·확일성을 보완하고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현 수도권 면적의 약 76.2%에 상당하는 상생협력지구 내에서 수도권 내의 권역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현행법의 목적²⁷⁾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규제 완화 시 수질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충청남도는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상생협력지구의 규제 특례 범위에 대해서는 동 지구의 지정 목적,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및 사용(안 제2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6(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및 사용) 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u> <u>②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u> <u>2. 상생협력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u> <u>③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u>1.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기구의 설치 및 운영</u> <u>2.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u> <u>3.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u> <u>4.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u> <u>5. 그 밖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u>④ 정부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u> <u>⑤ 상생협력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상생협력계정으로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영하며, 그 밖에 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른 법률의 개정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연번 72 신설 7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여 국토교통부가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산학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나 지역의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 예산과 별도로 설치된 상생협력기금에서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기금의 설치에 필요한 “특정한 목적²⁸⁾”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은 상생협력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안 제20조의6제2항제1호), 정부는 매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상생협력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는바, 기금 설치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의 부칙에서 ‘다른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을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28)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은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입법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개의 개정법률로 개정하는 방식²⁹⁾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74

29)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p. 150~153(1. 별개의 개정법률안 연계 개정) 참조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각각 입안하여 개정하는 방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하나의 개정법률안에서 하나의 법률을 대상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가장 충실한 개정 방법이다.

(중 략)

한편,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입법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특정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해당 내용의 신설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의 근거와는 별도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특정 법률의 소관 위원회에서 특정 법률 개정안의 심사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개정법률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조항을 두면서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도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 명문 규정으로 다른 법률의 부칙 등을 통한 개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개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